

2009. 3. 30

條例案審查報告書

- [1]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충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 [3]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충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충주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조례 폐지 조례안
- [6]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충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總務委員會

條例案審查報告書

1. 심사경과

조례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①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3.17	2009.3.17	2009.3.24	2009.3.24	심재연의원
② 충주시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	"	"	"	기획감사과장
③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종합민원실장
④ 충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세정과장
⑤ 충주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조례 폐지 조례안	"	"	"	"	회계과장
⑥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주민지원과장
⑦ 충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2. 제안설명요지

①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제2조 제1항)의 시상부문에 있어 산업경제부문에 포함되어 있는 농업부문을 분리 신설하여 농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충주시 농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민대상 시상부문에 “농림축산부문” 신설
(안 제2조제1항제4호)

② 충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제2조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충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

③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도로명의 변경요건 및 절차와 도로명주소의 고지, 고시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어 조례로 정하고 있던 동일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명의 변경요건, 도로명의 변경, 도로명주소의 고지, 고시에 관한 조항 삭제(안제3조부터 제5조, 제26조제2호,

(별지 제1호서식)

- 나. 충주시새주소위원회 간사를 5급에서 6급으로 변경
(안 제29조)

④ 충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자동차세 연납자, 지방세 정기분 납기내 납부자, 전자송달납부자,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대상으로 정함(안 제3조)

- 나.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함(안 제4조)

- 다.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의 지원기준을 정함(안 제5조)

- 자동차세 연납자 및 지방세 정기분 납기내 납부자, 전자송달 납부자는 징수비용(우편 송달료 등)을 감안하여 각종 물품, 상품권 또는 1만원 이하(1건당)의 현금 지급
-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세무조사 1회 유예,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한 연장신청시 납세담보 완화, 성실납세자 표창

- 라.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시책을 발굴·시행하는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7조)

⑤ 충주시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8조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충주시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조례 폐지

⑥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했던 65세 이상의 모든 유공자에게 참전 명예수당 지원을 확대함은 물론,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사망위로금 등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존중하고 예우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참전명예수당 인상 : 월 1만원 ⇒ 2만원(안 제3조 제1항)
- 나. 사망위로금 신설 : 유공자 사망 30만원 (안 제3조 제2항)
- 다. 지원대상자 확대 : 보훈급여자 포함(안 제4조)

⑦ 충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원의 상한 인원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우리 시의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 인원수 조정(안 제3조 제1항, 제4조제1항)
 - 10인 이상 20인 이하 ⇒ 10인 이상 30인 이하
- 나. 자연스럽지 아니한 표현을 알기 쉬운 문맥으로 바꿈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①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2조제1항에 시상부문이 “문화 예술 언론부문”, “교육 체육부문”, “산업 경제부문”, “사회봉사 윤리부문” 등 4개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농림축산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시민들의 사기진작과 충주시의 농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림축산분야”를 신설하여 5개 부문으로 확대하려는 사항임.

- 본 “충주시 시민대상”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16년간 “충주시 문화상”이라는 명칭으로 “문화·학술부문”, “예술부문”, “언론·출판부문”, “교육부문”, “체육부문”, “산업경제근로부문”, “사회봉사윤리부문” 등 7개 분야로 나뉘어 운영되어오다 수상대상자 선정의 어려움 해소와 포상의 위상을 높이고자 수상부문을 4개로 축소하고 명칭을 “충주시 시민대상”으로 변경하여 2008년도부터 시행하였음.
- 1992년 이후 57명에게 수여된 충주시문화상 수상내역을 살펴보면,
문화·학술부문에 15명, 예술부문에 5명, 언론·출판부문에 6명, 교육부문에 1명, 체육부문에 11명, 산업경제근로부문에 6명, 사회봉사윤리부문에 13명이 수상을 한 바 있으며,
충주시 시민대상으로 바뀐 2008년도에는 4개부문에 각 1명씩 수상하였음.
- 이 외는 별개로 시군통합 전 중원군에서도 “군민대상”이 1991년부터 운영되었는데,
충주시와 통합이 되기 전까지 4년간 문화체육분야와 효행윤리 분야에 각각 4명씩 수상한 바 있음.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군통합 전후를 막론하고 총 65명이 “충주시문화상”, “충주시 시민대상”, “중원군민대상”을 수상하였으나,
수상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농업에 종사하는 시민이 수상을 한 사실은 있으나, 농림축산분야의 공적으로 시상을 한 예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분야의 수상대상자 발굴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본 개정 조례안 또한 이러한 이유에서 발의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음.

- 또한, 현행 조례에 의하여 충주시 시민대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하더라도 “농림축산분야”의 공적에 따른 수상자선정에는 문제점이 없겠으나

개정안과 같이 이 분야를 따로 정해놓음으로써 대상자 발굴에 관심과 노력이 뒤따르게 될 것으로 예측됨.

- 다만, “충주시 문화상”을 “충주시 시민대상”으로 변경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수상대상자 발굴의 어려움이었고,

이로 인해 시상부문을 7개 부문에서 4개 부문으로 축소하게 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을 계기로 각 분야별 단체 등의 요구가 촉발되어 다시 시상부문이 늘어나 과거처럼 시상자 선정에 따른 문제점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하겠음.

② 충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 본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던 부분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현행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하고자 제정한 법령으로 지방공기업의 설립과 해산, 임직원의 임면, 재무회계 등에 관련된 사항을 설립유형별로 규정하고 있음.
- 개정 전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에는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아야 되는 지방공기업의 규모를 정하고 있으며
이 법의 적용을 받던 지방공기업이 규모가 축소되어 이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경우
본 법의 적용을 받게 할 지방공기업의 규모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던 것을 조례로 위임하지 않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직접 규정한 것임.
(1999. 3. 31자 대통령령 제16213호)
-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은 상수도공기업과 하수도공기업 등 2개의 기업이 있으나,
본 조례와 무관하게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으며,
현행 조례는 위임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되어 폐지함이 바람직함.

[3]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조례 개정안은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던 도로명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2008.4.4 대통령령 제20764호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 동 법률 시행령에 반영된 내용과 금번에 삭제하고자 하는 조례의 내용을 상호 대조한 결과 달라지는 내용이 없어 시행상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음.
- 안 제29조에서 “충주시새주소위원회”의 간사를 5급 공무원에서 6급 업무담당으로 직급을 하향 조정한 것은
회의자료의 정리 및 사무처리 등 간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6급 업무담당이 담당하는 것이 더 용이하고 효율적이므로 집행부의 안대로 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충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본 조례안은

도 및 시세 등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성실납부자가 대우받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고 납부하게 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세목에 대해서는 “성실 납부자”를 선정하여 각종 물품이나 상품권, 1만원 이하의 현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라 하여 개인의 경우 연간 1천만 원 이상, 법인은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타 지역에서 충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시세 납부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사업자에게는 지방세 세무조사 1회 유예, 징수유예, 납세 담보 완화, 표창 등의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각 조문별로 검토하여 본 바,

조례안 제2조 중 제4호 가목에 지방세 납부액을 산정하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산정 기간을 규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5조 제1호의 경우 물품과 상품권에 대해서도 현금과 마찬가지로 지급상한액을 규정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안 제5조 제2호 나목에 “지방세 징수 유예”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 제3조제1항에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는 지방세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 제41조제1항에서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1. 풍수해·낙뢰·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등

다섯 가지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게 징수유예를 하는 것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충청북도에서 제천시가 제정하려고 했던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와 같은 사유로 재의요구한 사실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본 조례안은 서두에서 밝힌 조례제정의 취지와 같이 성실납세자를 우대함으로써 징세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 제4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기준을 시행규칙 등에 명확히 규정하고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훌륭한 시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본 조례안의 경우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대내외에 선심성 시책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⑤ 충주시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 본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1천만원 이상의 범위안에서 회계관직 및 책임범위 등을 감안,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본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은 조례가 아닌 규칙 등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며,

- 본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 등으로 정한다하더라도 효력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현행과 다름없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시에서 재정보증을 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음.

⑥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 조례안은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하였음에도 보훈급여를 받지 못하고 계신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들에게 월 1만원씩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여 오던 것을

보훈급여의 수급에 관계없이 65세 이상의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자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지원금액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하고, 사망자 위로금도 신설하여 사망자에게 30만원씩 지원하는 등

나라를 지키기 위해 참전하신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애국애족 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 2008년 12월 31일 기준, 지난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1,150명에게 1억4천4백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본 개정안대로 대상자를 확대하게 되면 590명 정도가 증가한 1,740명이 명예수당을 받게 될 전망임.
- 본 개정안에 따라서 지원대상과 지원금,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을 살펴보면, 우선, 명예수당은 지난해 1억4천4백만 원에서 2억7천4백만원 증가한 4억1천8백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사망자 위로금의 경우 충주보훈지청에 문의하여 본 바, 2007년도에 급여 중지된 분이 307명, 2008년도에 285명이 중지되었다고 하며, 금년 3월 9일 현재 47명이 사망하는 등 추세로 볼 때 연간 약 9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총 3억6천4백만원의 사업비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연간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임.
- 도내 타 시군의 지원사례를 보면, 월 1만원의 명예수당을 지원하는 시군은 충주시와 음성군 2곳이며, 2만원 3곳, 3만원 5곳이 지원되고, 영동군의 경우는 5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음.

또,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시군은 4곳이 있으며, 보훈급여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시군은 5곳이 있음.

- 본 조례개정을 통하여 지원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안은 지금까지 살펴본 도내 타 시군의 지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과다하게 책정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며,

[시군별 수당 지급현황]

시군명	수당지급내용			수당지급제외대상
	지급액(월)	지급액(연간)	시행일	
충주시	1만원	12만원	08.01.01	보훈급여수령자
청주시	3만원(사망위로금 30)	36만원	09.01.01	제외대상 없음
제천시	3만원('08년은 2만원)	24만원	08.01.04	"
청원군	3만원(사망위로금 15)	36만원	08.01.01	월남참전자 제외
보은군	-	-	-	-
옥천군	3만원	36만원	09.01.01	제외대상 없음
영동군	5만원(사망위로금 30)	60만원	09.01.01	"
진천군	2만원(사망위로금 15)	24만원	09.01.01	보훈급여수령자
괴산군	2만원	24만원	08.12.12	제외대상 없음
음성군	1만원	12만원	08.01.01	제외대상 없음
단양군	2만원	24만원	08.02.21	보훈급여수령자
증평군	3만원	36만원	09.01.01	"

- 본 조례의 개정과 연관된 일로서 무공수훈자회와 상이군경 회에서 현행 조례에 보훈급여자가 명예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시와 의회에 전달하고 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참전유공자 또한 도내 타 시군에 비

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에 불만이 있는 상황임.

따라서 소요예산 증가에 따른 부담이 다소 따르더라도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 맞게 집행부의 안과 같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지원액을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⑦ 충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을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각각 10명 이상 20명 이하인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던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보건복지기족부령 제73호, 2008.11.5)하여

각 협의체별로 10명 이상 30명 이하인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구성인원 수를 조정함에 따라서 이를 우리 시의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충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 20명, 실무협의체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협의체별로 년간 2~4회 정도 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의 복지시책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음.

○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더 많은 수의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계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우리지역사회의 복지수요 및 여론 등이 보다 심도 있고 폭넓게 시책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 답변 요지

①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질의 : 농업부문에서는 수상경력이 없는데 심사과정에서 탈락된 것인가?
○ 답변 : 대상자가 없어서 공적이 올라 온 적이 없음.

② 충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 ▶ 질의 : 없음

③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질의 : 없음

④ 충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질의 :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게 되는가?
○ 답변 : 본인 신청에 의하지 않고 대상자를 1년에 1회 선정, 본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며, 자동이체 통장을 통해 지원할 계획임.
▶ 질의 : 자동차세연납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이중지원 아닌가?
○ 답변 : 우편료 등의 절감요인을 성실납부자인 전자납부자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것임.
▶ 질의 : 체납액이 있어도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 답변 : 선정과정에서 체납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하겠음.
▶ 질의 : 사상대상자는 고액위주로 선정할 계획인가?
○ 답변 : 여러 가지를 참작하여 선정토록 하겠음.

⑤ 충주사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 ▶ 질의 : 없음

⑥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질의 :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려는 이유는?

- 답변 :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 ▶질의 : 지원금액을 더 상향할 수 있는가?
- 답변 : 전국의 지원사례를 참작한 것임.

⑦ 충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 없음

5. 심사결과

①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② 충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③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④ 충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제5조제2호나목 중 “지방세 징수유예,” 삭제	
⑤ 충주시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⑥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제3조 제1호 중 “2만원” 을 “3만원” 으로 수정	
⑦ 충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봉 임

- ①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② 충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부.
- ③ 충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④ 충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1부.
- ⑤ 충주시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1부.
- ⑥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1부.
- ⑦ 충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충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 제2호 나목 중 “지방세 징수유예,”를 삭제한다.

〈수정안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5조(지원 등) (생략)</p> <p>1. (생략)</p> <p>2. (생략)</p> <p>가. (생략)</p> <p>나. <u>지방세 징수유예</u>, 납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p> <p>다. (생략)</p>	<p>제5조(지원 등) (제정안과 같음)</p> <p>1. (제정안과 같음)</p> <p>2. (제정안과 같음)</p> <p>가. (제정안과 같음)</p> <p>나. 납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p> <p>다. (제정안과 같음)</p>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제1호 중 “2만원”을 “3만원”으로 수정한다.

〈수정안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3조(지원사업) (생략) 1. 참전유공자에게 월 <u>2만원</u> 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2~3.(생략)	제3조(지원사업) (개정안과 같음) 1. ----- <u>3만원</u> ----- ----- 2~3.(개정안과 같음)